

수입담배 관세 인상의 효과

— CGE모형을 이용한 분석 —

신동천 · 이창수

수입담배에 대한 관세율 인상은 국내담배산업의 보호라는 관점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정책적인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연산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우리 나라에 수입되는 담배에 부과되는 관세율을 인상시키는 경우 국내 담배산업과 담배소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모의실험결과 10%와 40% 관세율 인상은 외국산 담배수입을 각각 3%, 12% 감소시키지만 전체담배소비량을 각각 0.4%, 1.6% 소폭 감소시킬 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수입담배 관세율 인상정책은 불필요한 무역마찰의 소지를 제공할 위험이 있는데 반해 국민경제 및 국민보건에 실익이 없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I. 서 론

우리 나라는 지난 1988년 한·미 담배양해록을 체결하면서 투자형태에 대한 아무런 제한 없이 한국내의 담배제조를 위한 외국기업의 투자를 허용할 때까지 수입담배제품에 대하여 0%의 관세율을 유지한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 규정에 따라 그 동안 관세법에 규정된 40%의 담배제품 관세율과 20%의 잎담배 관세

율을 적용하지 않고 무관세를 유지해 왔다. 2000년 12월에는 담배사업법의 제조독점 폐지를 전제로 관세법을 개정하여 완전면제 조항에서 수입담배 항목을 삭제한 바 있고, 2001년 6월 말까지 할당관세 제도를 적용하여 수입담배에 대해 한시적으로 무관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2001년 7월 1일부터 개정 담배사업법에 따라 한국담배인삼공사의 제조독점권이 해소되고 제조허가제가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지난 1988년 이후 한국정부와 미국정부 간에 체결된 담배양해록에 의해 0%의 관세율을 유지해 왔던 수입담배에 대한 관세부과 문제가 새롭게 제기되었다.

당초 한국은 수입담배에 대해 개정 담배사업법과 시행령이 발효되는 2001년 7월 1일부터 40%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입장이었고 미국통상대표부(USTR)는 한국정부에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 이후에도 3년 동안 외국산 담배에 대해 무관세를 허용해 줄 것과 이후에도 40% 미만의 관세율을 적용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한 바 있다. 이에 한국은 담배제조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당장 허용한다 하더라도 실제 투자와 생산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통상 2~3년이 소요된다는 점과 40%의 기본관세율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대한국 담배수출국과의 통상마찰을 우려, 매년 10%씩 관세를 인상하여 2004년 7월부터 4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와는 달리 담배 반제품인 각초(가공된 잎담배)에 대해서는 국내에 원료가공 공장의 설립을 유도하기 위해 40%의 관세율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수입담배 관세율 인상과 관련된 몇 가지 현안을 정리해 보고, 수입담배에 대한 관세율이 실제 10%와 40% 인상될 경우 과연 어떠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모의실험을 통하여 수입담배에 대한 관세율 인상의 논리적 타당성과 경제적 효과를 분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관세율 인상정책이 국내 담배소비량 억제 및 청소년 흡연억제라는 국민보건정책에 어느 정도의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다.

제II절에서는 담배수입 동향 및 배경, 수입관세율의 국제비교를 통하여 관세 인상의 정당성을 살펴보고, 제III절에서는 모의분석에 사용된 계산모형인 CGE모형을 간단히 설명한다. 제IV절에서는 CGE모형을 활용하여 관세인상 모의실험 결과를 정리하고, 제V절은 요약 및 결론이다.

II. 국내 담배산업과 관세인상

담배산업에 대한 조세인상, 청소년 흡연억제, 반흡연 운동 등 다양한 공공 보건정책의 실시로 미국내 담배수요량이 급감하자 미국은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까지 301조(및 이후 개정안)를 무기로 일본, 대만, 한국, 태국 등 아시아 각국의 담배시장을 개방시켰다. 한국의 경우 1988년 5월 수입담배 관세율을 대폭 인하하면서 담배시장을 개방하였다. 그 이후 다국적 담배기업들의 청소년 및 여성에 대한 마케팅 활동 강화로 아시아 각국에서 미국산 담배의 판매점유율 및 일인당 담배소비량이 모두 급증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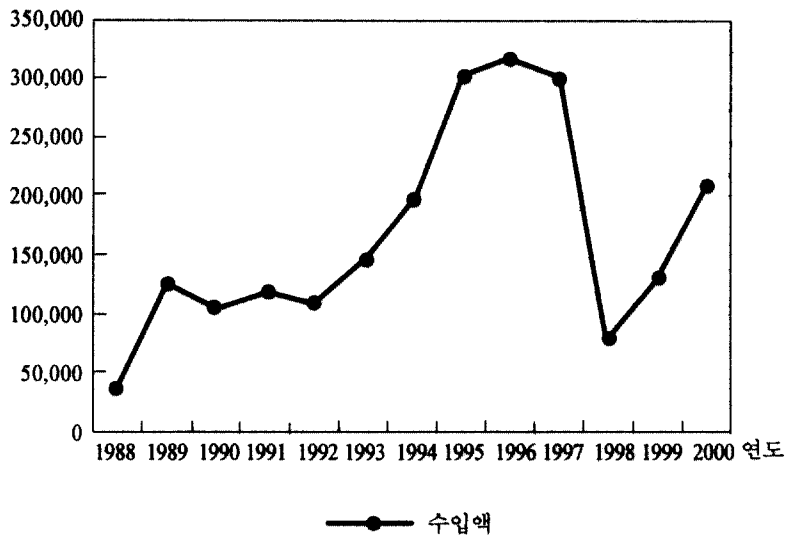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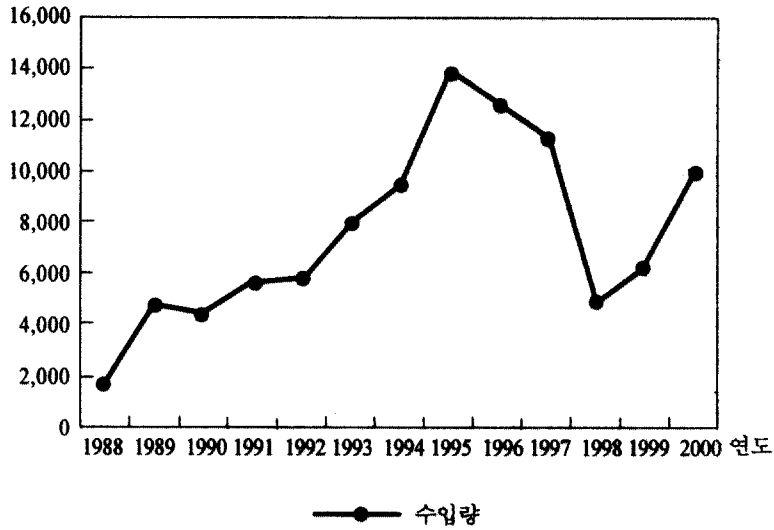
한국의 경우 담배수입 동향 및 외국산 담배의 국내시장 점유율(매도량 기준)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1>, <그림 2>와 같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1988년에 국내 담배시장이 개방된 이후 수입이 급증하였으며, 1995년 정점에 이르렀고, 1996년부터 1997년까지 담보상태에 머물다가 1998년 경제 위기의 여파로 담배수입이 급감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99년부터 경제위기에서 벗어나면서 다시 외산담배의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과정에 있다. <그림 2>에 나타난 외국산 담배의 국내시장 점유율도 같은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1995년에 12.5%로 정점에 도달한 후 1996년부터 1997년에 11% 정도를 유지하다가 1998년 4.9%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그러나 2000년에는 9.4%를 기록하는 등 다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1990년대 이후 국내의 담배소비량이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외국산 담배 수요량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산 담배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마련은 단순한 무역규제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나라 담배소비자의 전체흡연량을 억제하는 공공보건정책의 장기적 성공을 달성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공보건정책의 일환으로 수입담배 관세인상은 정당화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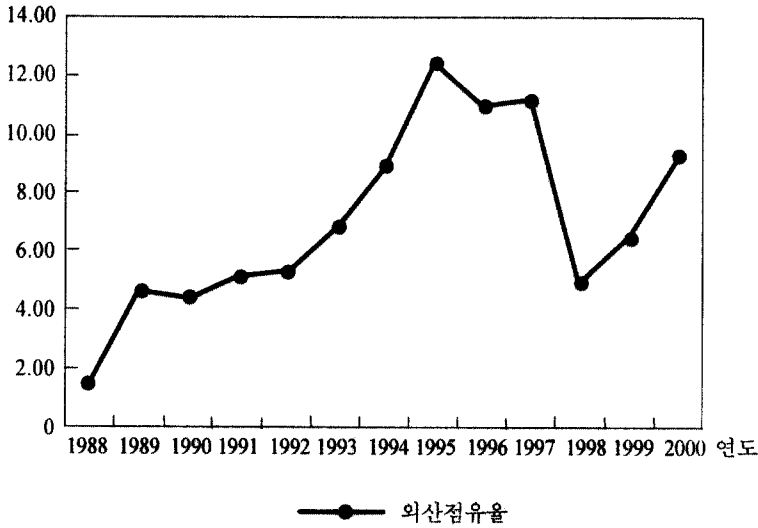
다음은 우리 나라 수입담배 관세율이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인지 검토

1) Chaloupka and Laixuthai [8].

〈그림 1〉 담배수입 추이(단위: M/T, 천달러)



〈그림 2〉 외국산 담배 국내점유율 추이(단위: %)



해 보고 수입담배 관세율을 40%까지 인상하는 것이 과연 국제적인 관점에서 통상마찰을 야기시킬 만큼 무리한 정책인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표 1>은 주요국들의 담배수입 관세율을 보여주고 있다(<부표 1> 참조). 각국은 담배 판매시장 개방에 따른 자국기업의 보호를 위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찍이 민간기업으로 출발한 미국, 영국, 캐나다는 저율 관세정책을 견지하고 있지만 국영기업 민영화를 통해 자국시장을 개방한 EU, 동유럽, 멕시코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담배산업 보호를 위해 고율의 실효관세(effective tariff)를 부과하고 있다. 즉, 원료 잎담배는 상대적으로 저율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제조담배와 각초(가공 잎담배)에 대해서는 자국담배산업보호와 자국산 잎담배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50% 이상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말 미국에 의해 비슷한 과정을 거쳐 담배시장을 개방한 아시아 주요국들의 수입담배에 대한 관세율은 아주 낮은 상태이다. 특히 일본과 대만의 경우 미국정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수입담배제품에 대해 무관세를 유지하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나라도 이들 국가와 같이 담배에 대하여

〈표 1〉 주요 국가별 수입담배 관세율

국가별	일담배(2011)	일담배(2012-20)	각초(2403, 10)
일 본	0%	0%	3.4%
대 만	20.0%	0%	20.0%
불가리아	40.0%	50.0%	40.0%
중 국	40.0%	65.0%	65.0%
브 라 질	17.0%	0.81US\$/갑 + 23.0%	23.0%
말레이시아	30%	미확인	70%
E U	11.2%	57.6%	74.9%
헝 가 리	47.0%	57.6%	-
멕 시 코	45.0%	67.0%	67.0%
폴 란 드	30.0%	90.0%	120.0%
터 어 키	25.0%	0.4US\$/갑 + 63.0%	81.9%
캐 나 다	8.0%	12.5%	8.5%
미 국	0.409US\$/kg	1.05US\$/kg + 2.3%	0.328US\$/kg

주: 괄호 안은 상품코드임.

0%, 일담배에 대하여 2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담배의 경우 매년 10%씩 인상하여 궁극적으로 40%수준에 이르게 할 것이며 각초의 경우에도 40%의 관세율을 유지할 것이다. 국제적 평균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 나라의 수입담배 관세율을 40%까지 인상하더라도 높은 수준은 아니다. 다만 미국에 의해 동일선상에서 유사하게 취급되는 인접국가의 관세율에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수준임은 부정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수입담배에 대한 관세인상이 가져올 미국과의 통상마찰 가능성을 검토해 보기로 하자.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하에서는 담배 및 일담배가 농산물 범주에 포함되어 있어 자국산업의 보호차원에서 일반상품과 달리 상대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허용하고 있다. 담배관세율은 각국 정부가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농산물 이행계획서를 GATT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받은 사항으로 각국의 실정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WTO에서 담배 수입관세가 통상마찰의 대상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우리 나라 현행 관세법상의 기본세율인 일담배 20%와 제조담배 40%는

〈표 2〉 UR농산물 이행계획서상 담배관련 양허관세율(%)

구분	기본관세율	양허관세율	인하비율	실효관세율
잎담배	71.0	54.0	-17.0	20
제조담배	100.0	65.5	-35.5	40

1994년 UR 양허세율 범위인 잎담배 54%와 제조담배 65.5% 및 외국의 관세율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국내산업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수입담배 관세율을 현행 관세법상 기본세율(잎담배 20%, 제조담배 40%, 각초 40%)로 적용하는 것이 다자간 협상의 관점에서 볼 때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현재의 상태(수입담배에 대해서는 10%의 관세부과, 잎담배에 대해서는 20%)를 유지할 경우 원료에 대한 관세율이 원료를 가공한 제품의 관세율보다 더 높게 되는 역관세의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요약하면 담배산업은 여타산업과 차별성을 갖는 특수산업으로 국민보건차원에서 규제가 필요한 산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여타 산업에서처럼 관세유예 또는 인하가 소비자의 후생을 증대시키지도, 국민경제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초래하지도 못한다. 반대로 관세유예 또는 인하정책은 과거 1988년 담배시장 개방에서와 같이 광고 및 판촉 경쟁을 유발,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흡연의 확산으로 국민보건에 위대한 상황을 전개시킬 개연성이 크다. 따라서 담배산업은 일반산업과는 차별화된 접근을 필요로 하며, 이런 사유로 각국 정부는 일반상품에 비해 고율의 관세를 담배수입에 부과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Ⅲ. 분석모형 및 자료

계산가능한 일반균형모형(CGE모형)은 각 산업부문간의 연관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정부의 경제정책 변화나 외생적인 변수의 변화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환류효과(feedback effects)를 고려하여 보다 상세히 분석할 수 있다는 장

점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의 모의분석에서도 이러한 장점을 활용하여 수입담배 관세율 인상이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CGE모형을 설정하였다. CGE모형은 가계 및 정부의 효용함수와 각종 생산함수에 대한 구체적인 가정과 결합하여 경제주체들의 적정화로부터 각 재화의 수요함수 및 공급함수를 도출한다.²⁾ 대부분의 다른 CGE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본 논문에서도 생산요소시장을 포함한 모든 시장이 완전경쟁적이며 본원적 생산요소들이 완전고용된다고 가정한 월라스 일반균형 방정식체계를 설정하고 이 방정식체계의 해, 즉 일반균형점을 계산하게 된다.

본 논문의 목적과 한국의 경제규모를 감안할 때 본 논문에서는 세계경제 전체를 모형화하는 대규모 CGE모형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한국경제가 소규모 개방경제인 것으로 가정함으로써 국제시장 상품가격체계는 한국경제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규모 개방경제에 관한 CGE모형의 경우 수출재와 수입재의 가격은 국제시장에서 결정되고 국내재의 가격은 국내시장의 수요 및 공급 조건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와 함께 재화의 종류에 관하여 대부분의 CGE모형에서 사용하고 있는 Armington [5] 가정을 채택하여 국내재와 수입재는 상호 불완전대체재로서 수입재와 완전동질적인 재화는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으며 수출재는 국내에서 소비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³⁾

Robinson [14]이 강조하고 있듯이 신고전학파 CGE모형이 결정하는 것은 명목환율과 물가수준에 의하여 결정되는 실질환율과 무역수지의 안정된 관계이다. 즉, 무역수지가 주어지면 일반균형을 가능하게 하는 실질환율이 결정되며, 반대로 실질환율이 주어지면 일반균형이 이루어지는 무역수지가 모형에서 결정된다. 따라서 일반균형체계의 解를 구하기 위해서는 명목환율, 물가수준 및 무역수지 중에서 두 가지를 고정시켜야 한다. 본 논문의 목적이 환율문제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환율을 고정시키기로 한다. 환율을 고정시켰기 때문에 물가수준 혹은 무역수지 중 하나를 고정시킴으로써 일반균형체계의 해를 구할 수 있게 된다.⁴⁾

2) 모든 경제주체들은 시장가격체계가 주어진 것으로 생각하며 각자가 직면한 제약조건하에서 자기의 목적함수를 극대화 혹은 극소화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3) de Melo and Tarr [10] 참조하시오.

다음의 식 (E1)~식 (E30)은 모의분석을 위하여 사용된 CGE모형의 일반균형 방정식체계로서 가계, 기업 및 정부의 적정화조건들과 재화 및 생산요소시장의 청산조건들로 구성되어 있다. n 개의 財貨群이 있기 때문에 모두 $(18n + 11)$ 개의 내생변수와 같은 수의 방정식들로 구성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와 같이 한국 경제를 모두 26개 산업으로 통합하는 경우 모형의 연립방정식의 수는 총 479개가 되며, 이 연립방정식체계가 총 479개의 내생변수의 균형값을 결정하게 된다. 식 (E1)~식 (E6)은 각 가격들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식 (E7)은 물가지수를 정의하며, 식 (E8)~식 (E13)은 생산과 관련된 정의 및 적정화조건을 보여주고 있다. 식 (E14)~식 (E27)은 각 재화들에 대한 수요와 관련된 것들이며, 식 (E28)~식 (E30)은 재화시장 및 본원적 생산요소시장의 청산조건을 나타내고 있다.

$$\begin{aligned}
 (E1) \quad & PM_i = (1 + t_i)PVM_i \\
 (E2) \quad & PE_i = PWE_i \\
 (E3) \quad & P_i X_i = PS_i XS_i + PM_i M_i \\
 (E4) \quad & PD_i XD_i = PS_i XS_i + PE_i E_i \\
 (E5) \quad & PD_i [1 - intr_i] = PVA_i V_i + \sum_{j=1}^n IO_{ij} P_j \\
 (E6) \quad & PCG CG = \sum_{i=1}^n P_i ID_i \\
 (E7) \quad & F(P_1, P_2, \dots, P_n) = P^* \\
 (E8) \quad & VA_i = AD_i [L_i^{b_i} K_i^{1-b_i}] \\
 (E9) \quad & P_L L_i = b_i PVA_i VA_i \\
 (E10) \quad & P_K K_i = (1 - b_i) PVA_i VA_i \\
 (E11) \quad & VA_i = V_i XD_i \\
 (E12) \quad & XD_i = AT_i [q_i E_i^{\gamma_i} + (1 - q_i) XS_i^{\gamma_i}]^{\frac{1}{\gamma_i}}
 \end{aligned}$$

4) 신고전학과 CGE모형의 구조는 Robinson [14] pp. 884~947, Melo and Tarr [10], 신동천 [2]을 참조하십시오.

$$(E13) \quad \frac{E_i}{XS_i} = \left[\frac{PE_i}{PD_i} \frac{1-q_i}{q_i} \right]^{\frac{1}{r_i-1}}$$

$$(E14) \quad X_i = AC_i [d_i M_i^{-a_i} + (1-d_i) XS_i^{-a_i}]^{-\frac{1}{a_i}}$$

$$(E15) \quad \frac{M_i}{XS_i} = \left[\frac{PD_i}{PM_i} \frac{d_i}{1-d_i} \right]^{\frac{1}{1+a_i}}$$

$$(E16) \quad IOT_i = \sum_{j=1}^n IO_{ji} XD_i$$

$$(E17) \quad P_i CD_i = c_i (1 - mps) Y$$

$$(E18) \quad Y = (1 - dtr) \left(\sum_{i=1}^n PVA_i VA_i \right)$$

$$(E19) \quad HS = mps Y$$

$$(E20) \quad GR = TR + IDT + \left(\frac{dtr}{1-dtr} \right) Y$$

$$(E21) \quad P_i GD_i = g_i (GR - GS)$$

$$(E22) \quad TR = \sum_{i=1}^n t_i PWM_i M_i$$

$$(E23) \quad IDT = \sum_{i=1}^n intr_i PD_i XD_i$$

$$(E24) \quad GS = gmps GR$$

$$(E25) \quad ID_i = inr_i CG$$

$$(E26) \quad PCG CG = HS + GS + FS$$

$$(E27) \quad FS = \left(\sum_{i=1}^n PWM_i M_i \right) - \left(\sum_{i=1}^n PWE_i E_i \right)$$

$$(E28) \quad X_i = INT_i + CD_i + GD_i + ID_i$$

$$(E29) \quad \sum_{i=1}^n L_i = L^*$$

$$(E30) \quad \sum_{i=1}^n K_i = K^*$$

〈변수명〉

PM_i = 수입재의 국내가격	t_i = 관세율
PWM_i = 수입재의 국제시장가격	PE_i = 수출재의 국내가격
PWE_i = 수출재의 국제시장가격	P_i = 복합재(composite good)가격
PS_i = 국내재(domestic good)가격	PD_i = 부문별 GDP 가격
P^* = 물가지수	PVA_i = 부가가치가격
PCG = 자본재가격	P_L = 임금률
P_K = 자본지대	X_i = 복합재(composite goods)
XS_i = 국내재(domestic goods)	XD_i = 부문별 GDP
M_i = 수입량	E_i = 수출량
$intr_i$ = 간접세율	IO_{ij} = 투입-산출계수
VA_i = 부가가치	AD_i = 부가가치함수의 상수항
b_i = Cobb-Douglas형 부가가치함수의 지수	L_i = 노동수요량
K_i = 자본수요량	AT_i = CET함수의 상수항
q_i = CET함수의 분배변수	r_i = CET함수의 지수
AC_i = Armington함수의 상수항	d_i = Armington함수의 분배지수
a_i = Armington함수의 지수	IOT_i = 중간복합재수요량
CD_i = 가계복합재수요량	c_i = 가계Cobb-Douglas형 효용함수의 지수
mps = 가계의 저축률	Y = 가계의 가처분소득
dtr = 직접세율	HS = 가계저축
GR = 정부수입	TR = 관세수입
IDT = 간접세총액	GS = 정부저축
$gmps$ = 정부저축률	CG = 자본재
GD_i = 정부복합재수요량	g_i = 정부Cobb-Douglas형 효용함수의 지수
ID_i = 자본재생산을 위한 복합재수요량	inr_i = 자본재생산을 위한 Leontief계수
TS = 총저축	FS = 해외저축(무역수지)
L^* = 노동공급	K^* = 자본공급

본 논문의 기본자료는 한국은행이 2001년도에 발표한 1998년도 산업연관표이며 산업연관표의 기본분류인 402개 산업을 잎담배와 담배제품을 포함하는 26개 산업으로 통합하여 조정하였다. 조정된 산업분류는 (1) 농림어업, (2) 잎담배, (3) 광업, (4) 음식료품, (5) 담배제품, (6) 섬유·가죽, (7) 나무·종이, (8) 출판, (9) 석탄·석유제품, (10) 화학제품, (11) 비금속광물, (12) 일차금속, (13) 금속제품, (14) 일반기계, (15) 전기·전자, (16) 정밀기기, (17) 수송기계, (18) 기타제조업, (19) 전기·가스·수도, (20) 건설, (21) 도소매업, (22) 음식·숙박업, (23) 수송·보관·통신, (24) 금융·보험, (25) 부동산, (26) 공공 및 기타서비스이다.

IV. 분석결과

앞에서 설정된 CGE모형 방정식체계와 국내재와 수입재의 대체탄력성 및 국내재와 수출재의 변환탄력성에 대한 가정을 통하여⁵⁾ 모형을 보정(calibration)한 후 담배수입에 대하여 10%와 40%로 관세율을 인상하는 것이 경제 전체와 담배산업에 미치는 효과를 모의실험한 결과는 <표 3>과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3>에 의하면 수입관세율을 10%로 인상했을 경우, 외국산 담배의 수입은 약 3.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입담배와 국산담배의 비대체성으로 국산담배의 산출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하였다. 즉, 담배 국내산출(국내판매 + 수출) 및 국내판매, 부가가치가 약 0.1% 감소했을 뿐이다. 민간부문의 담배소비는 총 0.4% 소폭 감소하였고, 이 중 많은 부분이 담배수입의 감소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수입담배와 국산담배의 비대체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산출 및 국내판매가 감소한 것은 국내산출 및 수입의 복합재로 담배소비량을 묘사한 후 담배 등 26개 산업의 적정 소비량을 동 26개 산업의 상대가격 체계의 함수로 도출한

5) 산업별 국내재와 수입재의 대체탄력성은 외국의 연구결과와 신동천 [1]의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것을 가정하였으며 국내재와 수출재의 변환탄력성은 de Melo and Tarr [10]에서 사용한 수치를 가정하였다.

〈표 3〉 수입담배 10% 관세인상의 효과

(단위: %)

산 업	산 출	국내판매	부가가치	수 입	민간소비	간접세
농림어업	-0.0005	-0.0006	-0.0012	-0.0012	0	-0.0009
잎 담 배	-0.0937	-0.0938	-0.0942	-0.0941	×	-0.0942
광 업	0.0010	0.0010	0.0003	0	×	0.0006
음식료품	-0.0008	-0.0009	-0.0013	-0.0022	-0.0002	-0.0012
담배제품	-0.0939	-0.0939	-0.0941	-3.3527	-0.4122	-0.0939
섬유·가죽	0.0030	0.0018	0.0025	0	0	0.0026
나무·종이	-0.0014	-0.0015	-0.0019	-0.0020	-0.0002	-0.0016
출 판	0	0	-0.0002	-0.0001	-0.0004	0
석탄·석유제품	0.0004	0.0003	0	-0.0002	-0.0003	0.0002
화학제품	0.0012	0.0010	0.0007	0	-0.0002	0.0010
비금속광물	-0.0020	-0.0020	-0.0024	-0.0024	-0.0002	-0.0022
일차금속	0.0002	-0.0002	-0.0005	-0.0009	×	-0.0002
금속제품	-0.0019	-0.0021	-0.0023	-0.0031	-0.0002	-0.0022
일반기계	-0.0017	-0.0020	-0.0021	-0.0032	-0.0002	-0.0020
전기·전자	0.0028	0.0014	0.0023	-0.0005	0	0.0024
정밀기기	-0.0005	-0.0009	-0.0008	-0.0022	-0.0003	-0.0007
수송기계	0.0015	0.0002	0.0011	-0.0027	0.0002	0.0012
기타제조업	-0.0043	-0.0011	-0.0044	0.0087	-0.005	-0.0004
전기·가스·수도	0.0003	0.0003	-0.0004	-0.0005	0	0
건 설	-0.0044	-0.0044	-0.0047	-0.0049	×	-0.0046
도소매업	-0.0007	-0.0008	-0.0012	-0.0015	-0.0001	-0.0010
음식·숙박업	-0.0020	-0.0020	-0.0023	-0.0025	-0.0003	-0.0022
수송·보관·통신	0.0003	0	-0.0002	-0.0010	0	0
금융·보험	-0.0002	-0.0003	-0.0007	-0.0007	-0.0003	-0.0005
부 동 산	-0.0003	-0.0003	-0.0009	-0.0012	0	-0.0007
공공 및 기타서비스	0.0035	0.0035	0.0033	0.0037	-0.0006	0.0036

모형 특성에 기인한다. 이에 따라 수입관세율의 인상으로 담배의 상대가격이 인상되면 민간부문의 담배소비는 감소하고 여타 산업의 소비를 증가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표 4〉 수입담배 40% 관세인상의 효과

(단위 : %)

산 업	산 출	국내판매	부가가치	수 입	민감도	간접세
농림어업	-0.0020	-0.0023	-0.0046	-0.0045	-0.0002	-0.0037
잎 담 배	-0.3501	-0.3505	-0.3523	-0.3519	×	-0.3519
광 업	0.0034	0.0034	0.0008	0	×	0.0019
음식료품	-0.0033	-0.0036	-0.0049	-0.0080	-0.0006	-0.0045
담배제품	-0.3510	-0.3510	-0.3515	-12.0387	-1.5696	-0.3510
섬유·가죽	0.0091	0.0054	0.0074	-0.0007	0	0.0081
나무·종이	-0.0052	-0.0057	-0.0069	-0.0073	-0.0009	-0.0061
출 판	0.0002	0.0002	-0.0007	-0.0003	-0.0015	0
석탄·석유제품	0.0014	0.0010	0	-0.0009	-0.0010	0.0008
화학제품	0.0039	0.0030	0.0020	0	-0.0008	0.0030
비금속광물	-0.0064	-0.0065	-0.0081	-0.0080	-0.0009	-0.0072
일차금속	0.0008	-0.0005	-0.0015	-0.0030	×	-0.0005
금속제품	-0.0064	-0.0070	-0.0079	-0.0103	-0.0008	-0.0072
일반기계	-0.0056	-0.0067	-0.007	-0.0105	-0.0009	-0.0065
전기·전자	0.0100	0.0050	0.0080	-0.0016	0	0.0085
정밀기기	-0.0014	-0.0030	-0.0028	-0.0071	-0.0013	-0.0022
수송기계	0.0051	0.0008	0.0036	-0.0088	0.0005	0.0039-
기타제조업	-0.0167	-0.0043	-0.0169	0.0339	-0.0194	0.0017
전기·가스·수도	0.0010	0.0010	-0.0015	-0.0018	-0.0003	-0.0004
건 설	-0.0144	-0.0144	-0.0157	-0.0162	×	-0.0153
도소매업	-0.0026	-0.0028	-0.0045	-0.0052	-0.0005	-0.0036
음식·숙박업	-0.0078	-0.0080	-0.0088	-0.0096	-0.0011	-0.0085
수송·보관·통신	0.0008	-0.0002	-0.0009	-0.0036	-0.0002	-0.0004
금융·보험	-0.0010	-0.0010	-0.0024	-0.0024	-0.0010	-0.0017
부 동 산	-0.0010	-0.0011	-0.0033	-0.0041	-0.0003	-0.0025
공공 및 기타서비스	0.0127	0.0127	0.0119	0.0137	-0.0022	0.0132

수입담배제품의 관세율을 인상하는 경우 담배산업의 중간재로 사용되는 잎담배의 국내생산 및 수입도 변화하게 된다. 수입담배제품의 관세율을 10%로 인상하면 잎담배의 산출과 국내판매 및 부가가치가 약 0.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며 잎담배 수입도 비슷한 정도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담배제품산업과 잎담배산업이 대부분의 다른 산업에서 중간투입재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수입담배제품에 대한 관세율 인상이 다른 산업의 생산에 미치는 효과는 간접적일 수밖에 없으며 그 효과의 크기도 작을 수밖에 없다.

〈표 4〉는 수입관세가 40% 상승했을 때의 모의실험 결과를 보여준다. 외국산 담배 수입이 약 12.0% 감소하여 국내 담배소비의 1.6% 하락을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복합재의 모형 특성상 담배의 상대가격이 상승하여 국내 담배산출 및 국내판매, 부가가치도 0.35% 소폭 감소하였다. 10% 및 40%의 관세인상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담배소비량이 각각 0.4%, 1.6% 소폭 하락에 그친 것은 수입담배 관세율 인상정책이 단지 미국과의 무역마찰 불협화음만을 야기시킬 뿐 민간의 전체담배소비량을 감소시켜 국민보건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공공정책 목표의 달성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론이 외산 및 국산 담배의 대체탄력성을 대단히 비탄력적으로 가정했기(0.7로 가정) 때문에 발생했을 가능성을 찾아보기 위하여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국산 및 외국산 담배의 대체탄력성을 0.7에서 1.2로, 다시 3.0으로 증가시켰을 경우 민간 소비량 변화를 추적하였다. 이에 따르면 대체탄력성이 1.2로 증가했을 경우 관세율 10%, 40% 인상은 각각 민간소비를 0.41%, 1.51% 감소시켜 별 차이를 발생시키지 못하였다. 다시 대체탄력성을 3.0으로 가정하여 국산 및 외국산 담배의 수요를 탄력적으로 가정했을 경우도 민간소비량이 각각 0.23%, 1.31% 감소했을 뿐이었다. 따라서 민감도 분석의 결과는 수입담배 관세율 인상정책이 민간부문의 담배소비를 줄임으로써 국민보건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정책 목표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민간부문의 담배소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수입담배에 대한 관세율 인상과 같은 간접적인 무역정책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담배수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고 최선의 정책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V. 요약 및 결론

최근 우리 나라의 담배제조 독점권 폐지 및 외국 담배기업의 국내생산 허용은 그 동안 한시적으로 유지해 온 수입담배의 무관세정책을 변화시켜 40%로의 관세율 복귀라는 관세부과 문제를 촉발시켰다. 현재 0%의 관세율에서 매년 10% 인상, 40%에 도달한다는 정부의 관세인상정책은 한미양해협정의 무관세조건이 사라졌다는 점에서 볼 때 법적인 측면에서는 물론 정당하다. 또한 이러한 수입담배 관세율 인상은, 첫째 우리 나라 담배소비자의 전체흡연량을 억제하여 공공보건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공공보건정책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둘째 국제적 평균관세율의 관점에서 40%의 수입담배 관세율은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점에서, 셋째 현행 관세법상의 기본세율(잎담배 20%, 제조담배 40%)이 1994년 UR 양허세율 범위(잎담배 54%, 제조담배 65.5%)내의 수준이라는 점에서 무리한 정책변화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CGE모의실험 결과, 관세율을 10% 및 40%로 인상하면 외국산 담배 수입을 각각 3.4%, 12.0% 감소시키지만, 국민보건 증진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민간소비는 각각 0.4%, 1.6% 소폭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대되었던 국민보건정책적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수입담배 관세율을 40%로 인상하는 무역정책은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미국등 대한국 담배수출국의 입장에서 담배산업에 관한 한 한국과 유사하게 취급되고 있는 대만 및 일본의 무관세의 경우와 대조되어 통상마찰의 소지가 있는 반면에 국민경제 및 국민보건에 실익이 없다는 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수입담배에 대한 관세율 인상정책보다는 담배관련 세제인상 및 각종 흡연규제정책이 전체담배소비량 억제, 특히 청소년 흡연의 폐해를 억제하기 위하여 유효하고 효율적인 공공정책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부표 1〉 국제 수입관세 현황

국 가	상품코드	관세	증가세(%)	CIF VALUE
ALBANIA	24.02.20		100.0	
ARMENIA	24.02.20	US\$ 15/1000 pieces		
BARBADOS	24.02.20	44.09 B\$/kg		40.0
BELIZE	24.02.20	34.4 B\$/lb		
BRAZIL	24.02.20	US\$ 0.81/pack	23.0	
BRUNEI	24.02.20	60 Br\$/1000 pieces		
BULGARIA	24.02.20		68.3	
BRUKINA	24.02.20	1000CFA france/kg	3.0	
CAMEROON	24.02.20	1,700 CFA/1,000 pieces		135.0
CANADA	24.02.20		13.5	
COSTA RICA	24.02.20		40.0	
CROATIA	24.02.20		26.0	
CYPROU	24.02.20			68.4
CZECH REPUBLIC	24.02.20		56.7	
EUROPEAN UNION	24.02.20		63.0	
EUROPEAN UNION	24.02.20.07		23.3	
FIJI	24.02.20	95.21 Fijian dollars/kg		
GUINEA	24.02.20			120.0
HAITI	24.02.20		130.0	
HONDURAS	24.02.20		55.0	
HUNGARY	24.02.20		63.0	
ICALAND	24.02.20		29.0	
ISRAEL	24.02.20	FREE		
IVORY COAST	24.02.20	7.525 CFA france/kg	5.0	
JAPAN	24.02.20	FREE		
KYRGYZSTAN	24.02.20	FREE		
LAOS	24.02.20		60.0	
LATVIA	24.02.20		10.0	
MALTA	24.02.20	6.15 Maltese lira/kg		
MARTINIQUE	24.02.20		73.8	
MARTINIQUE	24.02.20.07		50.0	
MEXICO	24.02.20			67.0
NETHERLANDS ANT	24.02.20	FREE		
NEPAL	24.02.20		120.0	
NEW ZEALAND	24.02.20.01	193.36 NZ\$/1000 pieces	5.0	
NEW ZEALAND	24.02.20.02	241.7 NZ\$/1000 pieces	5.0	
NORWAY	24.02.20	14.45 kroner/kg		
PAPUA NEW GUINEA	24.02.20	73.15 kina/kg		
PARAGUAY	24.02.20			24.0
POLAND	24.02.20		90.0	

국제 담배 수입관세 현황(계속)

국 가	입항연도	관세율	중과세(%)	CIF VALUE
ROMANIA	24.02.20			104.0
SLOVAKIA	24.02.20			56.7
SLOVENIA	24.02.20			57.5
SOUTH AFRICA	24.02.20	28.45 rand/1000 pieces		
SOUTH KOREA	24.02.20	FREE		
SRI LANKA	24.02.20			1.0
SWITZERLAND	24.02.20.03	7.658 Swiss francs/kg		
SWITZERLAND	24.02.20.04	12.25 Swiss francs/kg		
TAIWAN	24.02.20		32.5	
TANZANIA	24.02.20	14.000 Tsh/1000pc	25.0	
THAILAND	24.02.20			30.0
TOGO	24.02.20.05	400 CFA francs/kg		
TOGO	24.02.20.06	300 CFA francs/kg		
TUNISIA	24.02.20			31.0
TURKEY	24.02.20	US\$ 0.40/pack	76.7	
UKRAINE	24.02.20	5 Ecu/1,000pc		
UNITED STATES	24.02.20	1.26 US\$/kg	2.8	
UNITED STATES	24.02.20.07	0.502 US\$/kg	1.1	
ZAIRE	24.02.20.01	925 zaires/kg		
ZAIRE	24.02.20.02	850 zaires/kg		

ITEM # DESCRIPTION	
24.02.20	Cigarettes containing tobacco
24.02.20.01	Cigarettes less than 0.8kg/1000 pcs. in weight
24.02.20.02	Cigarettes more than 0.8kg/1000 pcs. in weight
24.02.20.03	Cigarettes less than 1.35g/piece in weight
24.02.20.04	Cigarettes more than 1.35g/piece in weight
24.02.20.05	Cigarettes with filters
24.02.20.06	Cigarettes without filters
24.02.20.07	Cigarettes that are clove

자료: Tobacco Merchandise Association, Tobacco File, 각 연도.

▣ 참고 문헌 ▣

1. 신동천, “수입재와 국내재의 대체탄력성에 관한 연구”, 『經濟學研究』, 44, 1996, pp. 101~118.
2. _____, 『국제무역의 연산균형분석』, 세경사, 1999.
3. _____, “규모의 경제와 전력요금인상의 효과: 쿠르노-왈라스 CGE모형을 이용한 분석”, 『經濟學研究』, 48, 2000, pp. 273~295.
4. 한국담배인삼공사, 『담배인삼통계연보』, 1999.
5. Armington, P., “A Theory of Demand for Products Distinguished by Place of Production,” *IMF Staff Papers* 16, 1969, pp. 159~178.
6. Becker, G. and K. M. Murphy, “A Theory of Rational Addic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6, 1988 pp. 675~700.
7. Becker, G., Grossman, M. and K. M. Murphy, “An Empirical Analysis of Cigarette Addic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84, 1988, pp. 364~418.
8. Chaloupka, F. J. and A. Laixuthai, “U.S. Trade Policy and Cigarette Smoking in Asia,” *NBER Working Paper*, No. 5543, 1996.
9. Chaloupka, F. J. and K. E. Warner, “The Economics of Smoking,” *NBER Working Paper*, No. 7407, 1999.
10. de Melo, J. and D. Tarr, *A General Equilibrium Analysis of US Foreign Trade Policy*, The MIT Press, 1992.
11. Gruber, J., “Youth Smoking in the U.S.: Prices and Policies,” *NBER Working Paper*, No. 7506, 2000.
12. _____ and J. Zinman, “Youth Smoking in the U.S.: Evidence and Implications,” Jonathan Gruber (ed.), *Risky Behavior Among Youths: An Economic Analysis*, NBER, 1999.
13. Robinson, S. and L. Tyson, “Modeling Structural Adjustment: Micro and Macro Elements in a General Equilibrium Framework,” in H. Scarf and J. Shoven (eds.), *Applied General Equilibrium Analysi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4.
14. Robinson, S., “Multisectoral Models,” in H. Chenery and T. Srinivasan (eds.),

Handbook of Development Economics, VII, 1989.

15. Tobacco Merchandise Association, *Tobacco File*, 각 연도.